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73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10. 23.
판 결 선 고	2015. 11. 27.

주 문

1. 피고가 2014.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04,830원(가산세 987,9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가 2014.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예고통지를 기준으로 소장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8. 승용자동차 1대([redacted] 3,342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45,956,364원에 취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위 면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로부터 취득세를 납부받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5. 10. '원고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3,216,94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43,3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44,53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14. 7. 2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4. 10. 1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원고의 대표이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에 쌀화환 제조업을 추가하였고 2010. 8. 2. 위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2010. 7. 26. 위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상당히 유사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의 상호도 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개인사업체의 상호인 'B'와 유사하다. 따라서 원고의 설립은 구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본문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관하여 구 조특법 제6조 제2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②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구 조특법 제6조 제6항은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C은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08. 10. 6.부터 2010. 7. 16.까지 서울 구로구 E에서 주업종으로 장례관련 서비스업, 부업종으로 장례용품 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였다.

나) C은 2010. 7. 17. 상호를 'B'로 변경하고 사업의 종류로 쌀화환 · 쌀봉투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가 2010. 8. 2. 폐업하였다.

다) C이 개인사업자로서 2008. 10. 6.부터 2010. 6. 30.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0원이다.

라) 원고는 2010. 7. 26. 설립되어 쌀화환 · 쌀봉투 제조 및 판매업, 장례용품 제조 및 판매업, 장례 행사대행 및 교육업, 장례 행사진행 및 음식관리 교육업, 전자상거래업,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설립 당시 원고의 상호는 'F 주식회사'이었으나 2011. 4. 15.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본점 소재지는 '서울 구로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E'이었다가 2012. 2. 15. '서울 영등포구 G'으로, 2013. 8. 28. '서울 구로구 H'으로 각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법인명을 'A 주식회사', 개업일을 '2010. 8. 2.'로, 사업장 소재지 및 본점 소재지를 '서울 구로구 H'로, 사업의 종류를 '쌀화환 · 쌀봉투 제조업, 쌀화환 · 쌀봉투 도소매업, 장례용품 판매업, 전자상거래업(꽃, 화환, 화환대 등), 방문판매업(꽃, 화환, 화환대 등), 장례 행사대행 및 교육업, 장례 행사진행 및 음식관리 교육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2년경 사업장 소재지 및 본점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G(1층)'으로 정정하였다.

바) F 팀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10년 소셜벤처 전국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2010. 12. 6.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반창업부문 I을 받았다.

사) 원고는 J 'K' 발명을 특허 출원하여 L 위 특허를 등록하였고, M 'N' 발명을 특허 출원하여 O 위 특허를 등록하였다. 한편, 원고의 이사 P는 Q 'R' 디자인을 출원하여 S 위 디자인을 등록하였다.

아) 원고는 2012. 9. 19. 삼육지관공업 주식회사로부터 1년 동안 원고의 지시에 따라 삼육지관공업 주식회사가 제작한 지관을 공급받기로 하는 OEM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원고는 T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부터 'EL606. 포장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U '종이지관 화환장치 제작 기술'로 녹색기술 인증을 받았으며, V '종이지관 포장재(종이지관 화환, 꽃바구니)'로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았다.

차) 원고는 2013. 1. 2.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확인유형이 기술평가보증기업이고 유효기간이 2013. 1. 2.부터 2015. 1. 1.까지인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카) 원고의 매출액은 2010 사업연도 754,546원, 2011 사업연도 200,000원, 2012 사업연도 0원, 2013 사업연도 870,000원, 2014 사업연도 9,3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0, 내지 20, 22,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령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벤처기업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창업 후 3년 이내이자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 2013. 1. 2.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사업은 장례행사대행 및 교육 등 장례관련 서비스업과 장례용품 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이었다. C은 2010. 7. 17. 자신의 사업자등록에 쌀화환 · 쌀봉투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추가하였으나, 17일 만에 폐업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C이 개인사업자로서 쌀화환 · 쌀봉투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C의 개인사업과 비교하면 원고의 사업으로 쌀화환 · 쌀봉투 제조 및 판매업, 장례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설립 이후 원고의 이사 P가 화환 밑 지지대 부분에 쌀 포대를 올려놓는 디자인을 등록하는 한편 원고는 기존의 화환지지대 재료인 나무, 대나무, 철사, 플라스틱을 폐종이로 만든 지관으로 대체하는 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명을 특허로 등록하였고, 원고는 2012년경부터 위 특허와 디자인 등을 이용하여 지관으로 제작한 화환지지대 위에 화환 또는 화환과 쌀을 설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는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으로 개발한 새로운 형태의 화환 등을 제조하게 되었고, 화환지지대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여하는 상을 받고 환경부장관 등으로부터 녹색기술인증 등을 받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쌀화환·쌀봉투 제조업, 장례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설립이 그 대표이사인 C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이 C이 하던 사업의 확장 또는 유사한 사업의 추가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나아가 원고는 2010. 7. 26. 설립되었으므로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본문의 적용 시한인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창업일인 2010. 7. 26.부터 4년 이내인 2013. 4. 18. 사업용 재산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징수하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윤진규

판사 이민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 14. 법률 제12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6)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끝.